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8.

발 의 자 : 이종성 · 강기윤 · 윤창현
김영식 · 하영제 · 백종현
박정하 · 이달곤 · 조정훈
김용판 · 지성호 · 김영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,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31%('21년 기준)에 불과함.

이에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사고에 대한 민·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45조).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4항 중 “가입할 수 있고,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”를 “가입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5조(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· 운영) ① ~ ③ (생 략)	제45조(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·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 음)
④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자신 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의 조합원으 로 가입할 수 있고,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공제조합이 정하 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④ ----- ----- ----- ----- -가입할 수 있다. 다만,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해당 공 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야 한다.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한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공제조합이 정하는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⑤ · ⑥ (생 략)	⑥ · ⑦ (현행 제5항 및 제6항 과 같음)